

영농조합법인 설립 어떻게 하나? (Ⅲ)

영농조합법인 정관 예<전문>

-홍보부-

◇...지난호에 이어 영농조합법인 정관 예<전문>의 제21조~설립사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9월호 58쪽에서 계속>

제 21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적립금(이하 "법정적립"이라 한다)과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산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가입할 날부터 5년이 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 22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마다 전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 고]

제2호의 사업준비금 배분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할 경우에는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마다 전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 23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10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 24조(조합의 지분취득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 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 26조(외부의 증여에 대한 처리)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에 대하여는 전조합원에게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가산한다.

제 27조(탈퇴시의 지분환불) ①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②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제 28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년도중에 환불하고, 회계년도말에 정산한다.

제 4 장 회 계

제 29조(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 성격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로 정하는 등 회계연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30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비 고]

제 1 호의 경우 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1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비 고]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의 정기적 게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를 『매월』 『분기마다』등으로 정한다.

제 3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비 고]

조합법인의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자가 부수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법인이 농작업을 수탁하여 대행한 경우와 농기계 및 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제 33조(선금금지)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연도말 결산전에 선금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 34조 (차입금) 조합법인은 제 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 35조(수익배분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재제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 (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 36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대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 1항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조합원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비 고]

제2항의 배당을 모두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 37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자본적립금 및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 5 장 임 원

제 38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인

3. 감사○인
4. 총무1인
5. 부장○인

[비 고]

1. 조합법인의 조합원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정수를 정한다.

2. 제5호의 부장은 조합법인의 사업에 따라 영농부장, 축산부장, 구매부장, 판매부장, 가공부장 등으로 명기한다.

제 3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제 40조(이사회)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및 총무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 41(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비 고]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 42조(이사회)의 의사록) 아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서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 43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

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결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중에서 선임하여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 각부장은 대표이사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 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비 고]

제5항의 경우 각부의 업무관장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4조(임원의 책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 1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게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비 고]

제 4항의 경우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제 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비 고]


임원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감사와 감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다르게 하여야 한다.

제 46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 4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8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상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음호 계속>

